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시	분
2000 사회개발비		5,239,855	4,154,675	1,085,180	[국 1,991,484	도 981,630	시 2,207,018	분 59,723]
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		5,239,855	4,154,675	1,085,180	[국 1,991,484	도 981,630	시 2,207,018	분 59,723]
2210 보건		5,239,855	4,154,675	1,085,180	[국 1,991,484	도 981,630	시 2,207,018	분 59,723]
2211 원미구보건소운영		5,239,855	4,154,675	1,085,180	[국 1,991,484	도 981,630	시 2,207,018	분 59,723]
100 경상예산		806,334	689,409	116,925	[국 164,197	도 48,849	시 593,288	분 0]
110 인건비		494,882	375,809	119,073	[국 164,197	도 48,849	시 281,836	분 0]
101 인건비		494,882	375,809	119,073				
		95,486	106,443	△10,957	02 수당 ◎초과근무수당 95,486 ●5급 9,471원X4명X25시간X12월 = 11,366 ●6급 8,036원X8명X25시간X12월 = 19,287 ●7급 7,210원X20명X25시간X12월 = 43,260 ●8급 6,461원X7명X25시간X12월 = 13,569 ●9급 5,794원X1명X25시간X12월 = 1,739 ●기능7급 7,210원X2명X25시간X12월 = 4,326 ●기능8급 6,461원X1명X25시간X12월 = 1,939			
		3,680	4,236	△556	08 기타직보수 ◎청경(초과근무수당) 3,680 ●청원경찰 6,132원X2명X25시간X12월 = 3,680			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부 목				
		31,850	31,279	571	09 일용인부임 ◎청사관리인건비 31,850 ●급여 27,280원X1명X365일 = 9,958 ●상여금 9,957,200원X4/12 = 3,320 ●연차수당 28,960원X1명X15일 = 435 ●대민봉사수당 50,000원X1명X12월 = 600 ●초과근무수당 5,473원X1명X30시간X12월 = 1,971 ●근속가산금 20,000원X12월 = 240 ●산업재해보험료 16,520,940원X5/1,000 = 83 ●퇴직금 15,243,000원X1명 = 15,243
		363,866	233,851	130,015	10 일시사역인부임 ◎방사선사 보조사업 인부임 12,540 ●기본급 42,360원X2명X120일 = 10,167 ●주휴수당 42,360원X2명X22일 = 1,864 ●연차수당 42,360원X2명X6일 = 509 ◎임상병리사 보조사업 인부임 8,177 ●기본급 42,360원X1명X156일 = 6,609 ●주휴수당 42,360원X1명X29일 = 1,229 ●연차수당 42,360원X1명X8일 = 339 ◎구강보건 보조사업 인부임 11,269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부 목					
					●기본급	42,360원X2명X108일 = 9,150
					●주휴수당	42,360원X2명X20일 = 1,695
					●연차수당	42,360원X1명X10일 = 424
					◎금연클리닉 보조임	= 78,000
					(국)	39,000
					(시)	39,000
					◎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보조임	= 145,800
					(국)	72,900
					(도)	36,450
					(시)	36,450
					◎암조기검진사업 보조임	= 12,095
					(국)	6,047
					(도)	3,024
					(시)	3,024
					◎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보조임	= 19,500
					(국)	9,750
					(도)	4,875
					(시)	4,875
					◎불임부부지원 보조임	= 18,000
					(국)	9,000
					(도)	4,500
					(시)	4,500
					◎치아 흠메우기사업 보조임	= 4,000
					(국)	2,0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시)	2,000
					◎운동영양사업 보조임	= 19,500
					(국)	9,750
					(시)	9,750
					◎재활치료실 운영 보조임	= 19,500
					(국)	9,750
					(시)	9,750
					◎운동처방실 운영 보조임	= 12,000
					(국)	6,000
					(시)	6,000
					◎건강보험지방자치단체부담금	40,797,000원X22.4/1000 = 914
					◎국민연금지방자치단체부담금	40,797,000원X45/1000 = 1,836
					◎고용보험지방자치단체부담금	40,797,000원X13/1,000 = 531
					◎산재보험료	40,797,000원X5/1000 = 204
120	경상적경비	311,452	313,600	△2,148		
	201 일반운영비	246,012	249,600	△3,588		
		245,012	246,400	△1,388	01 일반운영비	
					◎부서운영기본경비	47,520
					●일반수용비	50,000원X44명X12월 = 26,4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부 목				
					●급양비 40,000원X44명X12월 = 21,120
					◎당직근무수당 50,000원X2명X117일 = 11,700
					◎공공요금 및 제세 55,960
					●전기요금 3,500,000원X12월 = 42,000
					●상,하수도 사용료 750,000원X12월 = 9,000
					●기타공과금(자동차세,환경개선부담금,교통유발부담금) 4,000,000원X1식 = 4,000
					●도시가스 요금 80,000원X12월 = 960
					◎차량유지비 6,000
					●승용차 150,000원X2대X12월 = 3,600
					●소형승합 100,000원X1대X12월 = 1,200
					●엠블런스 100,000원X1대X12월 = 1,200
					◎건물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32,652
					●건물유지비 2,000원X3,136평 = 6,272
					●발전실,기계실 설비 유지비 등 7,000,000원X1식 = 7,000
					●냉동비 세관비 15,000원X200RT = 3,000
					●공조기 유지 관리비 600,000원X2회 = 1,200
					●열교환기 세관비 1,500,000원X1회 = 1,500
					●펜코일유닛 유지비 300,000원X176대X1/10 = 5,280
					●자동제어 유지 관리비 400,000원X12월 = 4,800
					●엘리베이터 유지비 2,000,000원X1식 = 2,0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●물탱크 청소 300,000원X2회 = 600
					●자가용설비 검사 수수료 1,000,000원X1회 = 1,000
					◎방화관리 위탁 수수료 165,000원X12월 = 1,980
					◎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수수료 200,000원X12월 = 2,400
					◎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450,000원X12월 = 5,400
					◎냉,난방비 2,400,000원X12월 = 28,800
					◎업무추진 우편료 10,900
					●일반 220원X30,000건 = 6,600
					●등기 1,720원X2,500건 = 4,300
					◎건강보건교육강사수당 150,000원X20회 = 3,000
					◎부천시 건강소식지 발행 4,500,000원X2회 = 9,000
					◎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70,000원X12명X2회 = 1,680
					◎국내 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 1,000,000원X1회 = 1,000
					◎보건전문직 및 법정보수교육비 50,000원X26명X1회 = 1,300
					◎적출물, 폐수 위탁처리비 3,600
					●적출물처리 600,000원X4회 = 2,400
					●폐수처리 1,200,000원X1회 = 1,200
					◎의료장비 유지비 = 3,000
					◎복사기 임차료 120,000원X2대X12월 = 2,880

과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470,000원X12월 = 5,640 ◎보건소 전산 유지 관리비 8,400,000원X1식 = 8,400 ◎영유아 예방접종증명서,예진표 제작 1,000,000원X1회 = 1,000 ◎임산부 출산교실 강사비 150,000원X8회 = 1,200
		1,000	3,200	△2,200	02 행사운영비 ◎재활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행사비 1,000,000원X1회 = 1,000
	202 여비	37,560	37,560	0	
		37,560	37,560	0	01 국내여비 ◎보건업무 추진 여비 70,000원X44명X12월 = 36,960 ◎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300,000원X2명 = 600
	203 업무추진비	11,800	11,360	440	
		3,000	3,000	0	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◎보건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= 3,000
		1,760	1,320	440	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◎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,000원X44명 = 1,760
		2,000	2,0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◎보건행정 업무추진 = 2,000

과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5,040	5,040	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◎부서운영업무추진비 (350,000원+5,000원X14명)X12월 = 5,040
	301 일반보상금	16,080	15,080	1,000	
		880	880	0	10 행사실비보상금 ◎질병관리모니터요원 교육비 10,000원X88명 = 880
		15,200	14,200	1,000	12 기타보상금 ◎의료부작용자 치료 및 보상금 100,000원X5명 = 500 ◎대한의사협회 의료자문 심의료 300,000원X5건 = 1,500 ◎공중보건 의사진료활동 장려금 500,000원X2명X12월 = 12,000 ◎공중보건 의사 방문진료 출장여비 50,000원X2명X12월 = 1,200
200	사업예산	4,433,521	3,465,266	968,255	[국 1,827,287 도 932,781 시 1,613,730 분 59,723 ]
210	보조사업	4,196,830	3,062,604	1,134,226	[국 1,827,287 도 932,781 시 1,377,039 분 59,723 ]
	201 일반운영비	145,373	112,864	32,509	
		145,373	112,864	32,509	01 일반운영비 ◎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= 10,000 (국) 5,000 (도) 2,500

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시)	2,500
					◎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교육 홍보사업	= 5,540
					(국)	2,770
					(시)	2,770
					◎한방 건강증진사업	= 4,500
					(국)	2,250
					(시)	2,250
					◎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	= 2,516
					(국)	1,258
					(시)	1,258
					◎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	= 8,200
					(국)	4,100
					(도)	2,050
					(시)	2,050
					◎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	= 5,626
					(국)	2,250
					(도)	1,688
					(시)	1,688
					◎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	= 20,000
					(국)	10,000
					(도)	5,000
					(시)	5,000
					◎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	= 4,131
					(국)	2,065
					(도)	1,033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시)	1,033
					◎임신부 산전관리비	= 42,500
					(국)	17,000
					(도)	12,750
					(시)	12,750
					◎노인건강관리사업	= 10,000
					(도)	5,000
					(시)	5,000
					◎건강생활실천 지도강사비	= 3,000
					(국)	1,500
					(시)	1,500
					◎건강걷기 교실 지도 강사비	= 3,640
					(국)	1,820
					(시)	1,820
					◎금연절주 글짓기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수당	= 800
					(국)	400
					(시)	400
					◎담배없는 직장 및 학교조성 사업	= 4,000
					(국)	2,000
					(시)	2,000
					◎걷기운동 열량표시 조형물 설치	= 3,000
					(국)	1,500
					(시)	1,500
					◎건강증진 전문인력교육(FMIP) 훈련비	= 3,00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국)	1,500
					(시)	1,500
					◎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	= 9,900
					(국)	4,950
					(시)	4,950
					◎금연클리닉 운영	= 4,600
					(국)	2,300
					(시)	2,300
					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	= 420
					(국)	210
					(시)	210
	202 여비	1,652	3,170	△1,518		
		1,652	3,170	△1,518	01 국내여비	
					◎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	= 400
					(국)	200
					(도)	200
					◎에이즈환자 등록관리여비	= 652
					(국)	326
					(시)	326
					◎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참석 여비	= 600
					(국)	300
					(시)	300
	301 일반보상금	107,960	58,000	49,960		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,000	5,000	1,000	10 행사실비보상금 ◎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= 5,000 (도) 2,500 (시) 2,500  ◎건강걷기교실 자원봉사자 관리비 = 1,000 (국) 500 (시) 500
		101,960	53,000	48,960	12 기타보상금 ◎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= 2,720 (국) 1,360 (도) 1,360  ◎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및 환아관리 = 96,600 (국) 38,640 (도) 28,980 (시) 28,980  ◎생물테러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= 2,640 (국) 1,320 (도) 1,320
	307 민간이전	3,905,305	2,813,570	1,091,735	
		3,057,682	2,230,338	827,344	01 의료및구료비 ◎노인의치보철사업 = 58,800 (국) 29,4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시)	29,400
					◎치아홈메우기 사업	= 5,000
					(국)	2,500
					(시)	2,500
					◎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등	= 200,731
					(국)	100,365
					(도)	50,183
					(시)	50,183
					◎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	= 987,733
					(국)	493,867
					(도)	246,933
					(시)	246,933
					◎성병진단시약 구입	= 900
					(국)	450
					(시)	450
					◎에이즈진단 시약구매	= 2,962
					(국)	1,481
					(시)	1,481
					◎성병검진 및 치료비	= 614
					(국)	307
					(시)	307
					◎에이즈환자 치료비	= 27,600
					(국)	13,800
					(시)	13,8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한센병 피부병 검진사업 = 2,750
					(도) 1,375
					(시) 1,375
					◎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= 145,286
					(도) 72,643
					(시) 72,643
					◎암환자 의료비 지원 = 216,800
					(국) 108,400
					(도) 54,200
					(시) 54,200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= 673,200
					(국) 336,600
					(도) 168,300
					(시) 168,300
					◎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= 150,000
					(국) 60,000
					(도) 45,000
					(시) 45,000
					◎불임부부 지원사업 = 242,000
					(국) 121,000
					(도) 60,500
					(시) 60,500
					◎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= 187,500
					(국) 150,000
					(시) 37,5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◎방문보건 간호용품지원 = 4,000 (도) 2,000 (시) 2,000 ◎금연클리닉 치료비 = 144,000 (국) 72,000 (시) 72,000 ◎금연,재활,운동처방실 소모품 = 4,000 (국) 2,000 (시) 2,000 ◎재활환자 운동치료전문가 상담교육비 = 2,000 (국) 1,000 (시) 1,000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(16세~40세) = 1,806 (국) 1,445 (시) 361
		124,918	139,917	△14,999	02 민간경상보조 ◎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= 3,600 (도) 1,800 (시) 1,800 ◎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= 1,000 (도) 1,000 ◎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= 85,318 (도) 25,595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(분)	59,723
					◎부천건강엑스포 행사비	= 35,000
					(국)	17,500
					(시)	17,500
		2,900	2,640	260	03 사회단체보조금	
					◎국가만성병(응급실손상등) 감시	= 2,900
					(국)	2,900
		719,805	440,675	279,130	05 민간위탁금	
					◎학교정신 건강증진 사업	= 30,000
					(국)	15,000
					(시)	15,000
					◎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	= 460,000
					(국)	75,000
					(도)	65,000
					(시)	320,000
					◎암조기검진 사업	= 229,805
					(국)	114,903
					(도)	57,451
					(시)	57,451
	405 자산취득비	36,540	75,000	△38,460		
		36,540	75,000	△38,460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
					◎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	= 4,000

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(도) 2,000 (시) 2,000
					◎금연교육장비 = 2,200
					(국) 1,100 (시) 1,100
					◎건강검기교실 운영장비 = 1,500
					(국) 750 (시) 750
					◎물리재활치료 장비 = 26,840
					(도) 13,420 (시) 13,420
					◎산소포화도 측정기 = 2,000
					(도) 1,000 (시) 1,000
220	자체사업	236,691	402,662	△ 165,971	
	307 민간이전	232,591	395,312	△ 162,721	
		162,750	325,471	△ 162,721	01 의료및구료비
					◎순회진료약품비 10,000
					●원미구 = 4,000
					●소사구 = 3,000
					●오정구 = 3,000
					◎한방약품비 22,000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			●원미구	= 10,000
					●소사구	= 6,000
					●오정구	= 6,000
					◎치과약품비	= 2,000
					◎소모품비	21,500
					●진료실	= 2,000
					●한방실	= 1,500
					●치과실	= 3,000
					●지역보건	= 2,000
					●질병관리	= 2,000
					●검사실	= 5,000
					●방사선실	= 5,000
					●재활실	= 1,000
					◎전염병진단키트 등 구입	= 3,000
					◎방문진료 약품비	10,000원X500명 = 5,000
					◎방문진료의료지원(가정간호 등)	500,000원X12명 = 6,000
					◎방문보건영양제구입	10,000원X300명 = 3,000
					◎방문보건영양개선식이 구입	30,000원X50명X3월 = 4,500
					◎간염,성병 등 검사실 시약(원미구)	= 20,000
					◎간염,성병 등 검사실 시약(소사구)	= 40,000
					◎간염,성병 등 검사실 시약(오정구)	= 10,000
					◎유료 B형간염 약품구입비	3,500원X4,500명 = 15,75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9,841	69,841	0	05 민간위탁금
					◎한방진료 업무대행 64,468
					●한의사 4,087,400원X12월 = 49,049
					●간호사 1,284,850원X12월 = 15,419
					◎한방진료업무대행자 퇴직금 5,373
					●한의사 4,087,400원X1회 = 4,088
					●간호사 1,284,850원X1회 = 1,285
	405 자산취득비	4,100	7,350	△3,250	
		4,100	7,350	△3,250	01 자산 및 물품취득비
					◎예방접종실 침대 400,000원X2대 = 800
					◎진료용 혈압계 250,000원X2대 = 500
					◎구강보건 교육용 현미경 2,800,000원X1대 = 2,800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부서합계		5,239,855	4,154,675	1,085,180	